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. 8. 16 선고 2017가단506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7. 12.

판결 선고 2017. 8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를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
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2. 7. 2. 접수 제18440호로 각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를 '이
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의 외조모이자 피고의 모(母) C의 모(母)이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으로 생활하고 있다.

C은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, 원고에게 '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 동생들이 빚을 질 수 있다. 집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계속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.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'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.

원고는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,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. 7. 2. 증여를 원인(이하 원고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을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체결되었거나 C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, 원고는 2017. 5. 26.자 준비서면1) 부분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가 C의 모(母)이고 피고의 외조모인 사실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, 4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C이 원고를 기망 또는 강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, 그 밖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류봉근

별지

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. 5. 26.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.